핵심 Check (소득세편)

2024년 귀속

세무사랑의 Pro 정석

저자 이문희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랑 Pro

정석 핵심 Check

소득세법

차례 CONTENTS

CHAPTER 01 개정세법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01 _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1
02 _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 ····· 2
03 _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2
04 _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3
05 _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4
06 _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 4
07 _ 간주임대료 과세범위 확대 및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 5
08 _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① ····· 6
09 _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7
10 _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8
11 _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9
12 _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 9
13 _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신설 ····· 10
14 _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11
15 _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 12
16 _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 12
17 _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 13
18 _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 ····· 13
19 _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 14
20 _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 ····· 14
21 _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 15
22 _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 16
23 _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 16
24 _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 17
25 _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 17
26 _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 18
27 _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18
28 _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 19

CHAPTER 02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01 _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 20
02 _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21
03 _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 22
04 _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22
05 _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 23
06 _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 ····· 24
07 _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5
08 _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26
09 _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최소 가입기간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27
10 _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27
11 _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28
12 _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 29
13 _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30
14 _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 30
15 _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 31
16 _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32
17 _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33
18 _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추가공제 요건 규정 ····· 34
19 _ 근로소득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 ····· 35
20 _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 35
21 _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36
22 _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및 세부사항 규정 ····· 38
23 _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및 세부사항 규정 ····· 39
24 _ 혼인세액공제 신설 ····· 40

차례 CONTENTS

CHAPTER 03 개정세법 관련 세무사랑 변경 서식

01 _ 종합소득세신고서 ····· 41
02 _ 종합소득세신고서(단순경비율) ····· 51
03 _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 52
04 _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54
05 _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55
06 _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56
07 _ 선급비용조정명세서 ····· 57
08 _ 추계신고자 관리 ····· 58
09 _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계산명세서 ····· 58
10 _ 전자계산서발급세액공제신고서 ····· 59

01 CHAPTER

개정세법

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0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소득령 §9, §9의 5)

종 전	개 정
□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양어소득 등 ○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과 합과	□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 ○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 3,000만원 → 5,000만원 -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 합산

〈개정이유〉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양식업 소득 비과세 관련한 업무는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계산명세서] 화면의 2.어로어업·양식어업에서 입력하여 관리합니다.

02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
(소득법 §12(3)마, 소득령 §10의2)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 비과세 소득 확대 (좌 동)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좌 동)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업무는 [급여자료입력]화면에서 처리합니다.
화면에서 F4수당공제를 클릭하여 수당공제등록 팝업창이 활성화되면 수당등록 탭 아래 과세구분에서 2. 비과세를 선택하고 수당명 빈칸에서 F2키를 누르면 비과세코드도움창이 활성화되고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확인(Enter)키를 눌러서 반영합니다. 이후 급여내용을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0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3)머)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 비과세 한도 상향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좌 동)
○ (한도) 월 10만원	○ 월 20만원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업무는 [급여자료입력]화면에서 처리합니다. 화면에서 F4수당공제를 클릭하여 수당공제등록 팝업창이 활성화되면 수당등록 탭 아래 과세구분에서 2.비과세를 선택하고 수당명 빈칸에서 F2키를 누르면 비과세코드도움창이 활성화되고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확인(Enter)키를 눌러서 반영합니다. 이후 급여내용을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0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종 전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신 설〉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❷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업무는 [급여자료입력]화면에서 처리합니다. 화면에서 F4수당공제를 클릭하여 수당공제등록 팝업창이 활성화되면 수당등록 탭 아래 과세구분에서 2.비과세를 선택하고 수당명 빈칸에서 F2키를 누르면 비과세코드도움창이 활성화되고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확인(Enter)키를 눌러서 반영합니다. 이후 급여내용을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0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법 §14)

종 전	개 정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좌 동) ○ 연간 1,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노후연금소득 세부담완화와 관련한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서]화면의 1.소득금액명세 탭에서 직접 입력하여 관리합니다.

1.소득구분코드-일련번호에서 66.연금소득을 선택하고, 9.총수입금액란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연금소득공제액에 해당하는 10.필요경비(배당대상액)란의 금액은 자동계산되어 반영됩니다.

06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소득법 §17)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❶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 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❷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율 조정 ○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법인단계에서 배당금을 지급시 배당금 지급액은 인건비 지급액과 달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 후 주주단계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면 이중과세가 되는데 소득세법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Gross-up 제도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 관련 업무는 별도의 조정명세서 없이 [종합소득세신고서]화면에서 작성합니다. 화면의 1.소득금액명세 탭에서 1.소득구분코드-일련번호란에 21.배당가산하는 배당을 선택하고 9.총수입금액(이자, 배당)란에 금융소득을 입력하고 10.필요경비(배당대상액)란에 배당대상액을 입력하면 11.배당가산액=대상액X10% 란에 해당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07 간주임대료 과세범위 확대 및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 §25①)

종 전	개 정
□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과세대상 확대 및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좌 동)
〈추 가〉	○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과세대상확대)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업무는 [종합소득세신고서(분리과세소득자용)] 화면의 주택임대소득계산 탭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08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①(소득법 §52⑤⑥)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 ~ 1,800만원
<table>
<tr><th colspan="3">상환기간 15년 이상</th><th>상환기간 10년 이상</th></tr>
<tr><td>고정금리+비거치식</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d>기타</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r>
<tr><td>1,8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d>300만원</td></tr>
</table>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td><td>□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600 ~ 2,000만원
<table>
<tr><th colspan="3">상환기간 15년 이상</th><th>상환기간 10년 이상</th></tr>
<tr><td>고정금리+비거치식</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d>기타</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r>
<tr><td>2,000만원</td><td>1,800만원</td><td>800만원</td><td>600만원</td></tr>
</table>
○ 기준시가 6억원 이하</td></tr>
<tr><td>□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추 가〉</td><td>□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td></tr>
</table>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업무와 관련하여서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화면에서 처리합니다. 화면의 3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당액란을 클릭하면 주택자금 팝업창이 활성화되고 관련정보를 입력하면 반영이 됩니다.

09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소득법 §59의2)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공제대상) 〈추 가〉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공제대상) - 손자녀

〈개정이유〉 출산·보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액 상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자녀세액공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원등록] 화면의 부양가족명세 탭에서 자녀 및 손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원등록]화면에서 입력한 정보는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화면의 연말정산입력 탭 57.자녀세액공제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10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조특령 §117의3④)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
○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좌 동)
〈추 가〉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공제율) 15%	○ (좌 동)
○ (공제한도) ❶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❶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❷ ❶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❷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업무처리는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화면의 의료비 탭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11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법 §59의4)

종 전	개 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신 설〉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좌 동) - 3천만원 초과: 40% ('24.12.31.까지)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기부금공제와 관련한 업무는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화면의 기부금 탭에서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기부금 탭은 기부금입력탭과 기부금 조정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부금 탭의 기부금 입력탭과 기부금 조정탭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에 기부금 조정탭의 우측 상단에 있는 기부금 공제금액 계산을 클릭하면 기부금 공제금액 계산 참조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이 팝업창에서 불러오기, 공제금액반영, 저장 버튼을 차례로 눌러 반영합니다. 이 후 [연말정산입력]탭에서 상단의 F8부양가족탭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부양가족 탭에 입력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지출액을 반영합니다. 주의할 것은 기부금 조정탭의 해당연도 공제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연말정산입력 탭에서 F8부양가족탭 불러오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소득법 §81의11)

종 전	개 정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상용근로소득: 매월 ○ 시행시기 - 2024.1.1. 이후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시행시기 - 2026.1.1. 이후

〈개정이유〉 원천징수의무자 납세 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은 인사급여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화면에서 불러오기하여 작성합니다. 현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제출하고 있으며 매월 제출의 시기가 유예되어 2026.1.1. 이후 시행됩니다.

13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신설 (소득법 §86, 소득령 §149의3)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 (내용)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 (적용 예외*) *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 이자소득 〈추 가〉	□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개정이유〉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사업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업무는 인사급여의 사업소득관리에서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자등록, 사업소득자료입력, 사업소득자료회계처리,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등 업무를 처리합니다.

14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①)

종 전	개 정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추 가〉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추 가〉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개정이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업무는 [급여자료입력]화면에서 처리합니다.
화면에서 F4수당공제를 클릭하여 수당공제등록 팝업창이 활성화되면 수당등록 탭 아래 과세구분에서 2. 비과세를 선택하고 수당명 빈칸에서 F2키를 누르면 비과세코드도움창이 활성화되고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확인(Enter)키를 눌러서 반영합니다. 이후 급여내용을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15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령 §17의4)

종 전	개 정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사택제공 이익 등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좌 동)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❷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개정이유〉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6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령 §17의4)

종 전	개 정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추 가〉	□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좌 동)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개정이유〉 출산·보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 부터 적용

17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소득령 §40의2)

종 전	개 정
□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 사후관리 방식 변경
*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 일반계좌에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 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개정이유〉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18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 (소득령 §51③)

종 전	개 정
〈신 설〉	□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 기준 ○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개정이유〉 보험모집인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산정 합리화

19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소득령 §55 ①)

종 전	개 정
□ 사회보험료 관련 필요경비 범위 ○ 사용자 본인의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추 가〉	□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 (좌 동)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개정이유〉 자영업자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

20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 (소득령 §80③,⑤)

종 전	개 정
□ 공익단체의 투명성 확보 의무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❶ 결산보고서: 행정안전부장관 ❷ 수입명세서: 관할 세무서장	□ 제출기한 연장 ○ 3개월 이내 → 4개월 이내 (좌 동)

〈개정이유〉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1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소득령 §81)

종 전	개 정
□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 한도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순서 규정
○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고향사랑 기부금 추가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기부금 관련 업무는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화면은 기부금입력탭과 기부금조정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기부금입력 탭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2. 기부금 조정탭에서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세무조정할 사항을 상단의 F3조정등록하여 반영하면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조정계산서]화면의 14.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반영됩니다.

22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소득령 §81)

종 전	개 정
□ 특례기부금의 범위	□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 (좌 동)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❶ + ❷)	○ (좌 동)
❶ 봉사일수(= 총봉사시간 ÷ 8) × 5만원	❶ 5만원 → 8만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 (좌 동)
❷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단서 신설〉	❷ (좌 동)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개정이유〉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3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령 §108의3)

종 전	개 정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 소득공제 요건 완화
○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 (좌 동)
○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 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
○ (한도) 연 20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

24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6의4)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 적용대상 확대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포함 ○ (좌 동)

〈개정이유〉 신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전자계산서발급세액공제관련 업무는 [전자계산서발급세액공제신고서]화면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합니다.

25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소득령 §184)

종 전	개 정
□ 의료용역 대가(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시 제외 〈추 가〉	□ 원천징수 배제 대상 추가 ○ (좌 동) ○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 배제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 응급환자·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개정이유〉 사업소득(의료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6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소득령 §212의4)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 사업자의 부도·폐업 ○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 가〉	□ 발급사유 규정 추가 (좌 동)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매입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령 별표2)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개정이유〉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적용시기〉 '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❶ 변호사 등 전문직 ❷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❸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❹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 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 매업 등 일부 소매업 ❺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 의무발행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 ① 여행사업, ②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 수영장운영업, ④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 실외경기장 운영업, ⑥ 실내경기장 운영업, ⑦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⑧ 볼링장운영업, ⑨ 스키장운영업, ⑩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 앰뷸런스 서비스업, ⑬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2 CHAPTER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01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특법 §16)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❶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❷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❸ 창업·벤처전문 PEF 에 투자 〈추 가〉 ○ (소득공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추 가〉 ○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추가 (좌 동) 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 (좌 동)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출자금액 ×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 투자비율*] × 10%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좌 동)

〈개정이유〉 벤처투자 유인 제고

〈적용시기〉 (적용대상)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영 시행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 업무처리는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화면에서 처리합니다.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화면의 연말정산입력 탭의 40.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란을 더블클릭하면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팝업창이 열립니다. 이 팝업창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연금저축 등Ⅱ] 6.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입력합니다.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화면의 연금저축 등 Ⅱ 탭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0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특법 §18, 조특령 §16)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대상) ❶ 또는 ❷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❶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❷ 아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좌 동)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 (좌 동)
〈추 가〉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 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감면율) 10년간 50%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사원등록] 화면에서 기본사항 등 사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 추가사항 탭 11.감면여부에서 3.외국인 기술자감면(50%)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감면입력에서 1.급여입력 또는 2.연말입력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1.급여입력은 감면규정을 매월 급여대장 작성시 적용하는 방식이고 2. 연말입력은 감면규정을 매월 급여지급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시 일괄적용하는 방식입니다.

03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조특령 § 16, § 16의2, § 16의3)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 요건 * ❶ (법 §1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❷ (법 §18 의 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❸ (법 §18 의 3) 내국인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 중으로 확대
○ 과세연도 종료일 (12.31)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국세기본법 시행령」§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개정이유〉 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 18의2)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 ~ 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좌 동)
〈신 설〉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중(소득령 부칙)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원등록] 화면에서 기본사항 등 사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 8.단일세율 적용에서 1.여를 선택합니다.

0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27)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 (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좌 동)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좌 동)
〈추 가〉	- 컴퓨터학원
○ (적용기한) '26.12.31.	○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사원등록] 화면에서 기본사항 등 사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 추가사항 탭 11.감면여부에서 1.중소기업취업감면을 선택합니다.

감면율은 취업일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일정비율을 선택합니다. 감면입력에서 1.급여입력 또는 2.연말입력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1.급여입력은 감면규정을 매월 급여대장 작성시 적용하는 방식이고 2.연말입력은 감면규정을 매월 급여지급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시 일괄적용하는 방식입니다.

06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

(조특령 §80의3)

종 전	개 정
□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수령 하는 공제금에 대한 과세	□ 공제금 지급사유 추가*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 사유 추가 *「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⑤~⑧의 사유가 추가될 예정
○ 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 받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 ① 폐업·해산, ② 가입자 사망 ③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④ 60세 이상 & 10년 이상 납입 〈추 가〉	○ 공제금 지급 또는 중간지급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 과세 ① ~ ④ (좌 동) ⑤ 자연재난으로 영업 불가 ⑥ 사회재난으로 영업 불가 ⑦ 6 월 이상의 입원치료 ⑧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 퇴직소득 과세 시 근속연수 산정방법	□ 공제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근속연수 산정방법 추가
○ 공제부금 납입월수 ÷ 12 〈추 가〉	○ (좌 동) ○ 중간정산 이후의 납입월수 ÷ 12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24.6.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07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7②)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5.12.31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좌 동) - 연 30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화면의 연말정산 입력탭에서 34.주택차입금원리금상환액을 더블클릭하여 주택자금 팝업창이 활성화되면 해당 란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팝업창 하단에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08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조특법 §88의5, 조특령 §81의4)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 (대상자) 조합 등*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특법 시행령)
○ (대상소득)예탁금·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 예탁금 3 천만원 한도
- 출자금 1 천만원 한도
○ (세율 및 적용기한)
<table>
<tr><th>소득발생 기간</th><th>'25.12.31. 까지</th><th>'26.1.1~'26.12.31.</th><th>'27.1.1. 부터</th></tr>
<tr><td>감면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
</table>
</td><td>□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좌 동)
- 출자금 2 천만원 한도
○ (좌 동)</td></tr>
</table>

〈개정이유〉 농어민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 받는 분부터 적용

09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최소 가입기간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19)

종 전	개 정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최대 24개월) ○ (적립한도) 월 40만원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월 55만원 ('25.1.1.부터) ○ '26.12.31.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군 장병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최소 가입기간 완화 ○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군 장병 - (좌 동)

〈개정이유〉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5.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95의2)

종 전	개 정
□ 소득기준 및 한도 ○ (소득기준) -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 7,000만원 ⇒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7,000만원) ○ (한도) 750만원 ⇒ 1,000만원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은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화면의 월세액 탭에서 처리합니다.
월세액 탭에서 1.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에서 월세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하단에 세액공제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 등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월세액란에 월세액을 입력해도 공제대상금액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1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21의35)

종 전	개 정
〈신 설〉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 (적용요건)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범위 및 의무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 전용계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 ○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0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 ○ (적용한도) 투자금액 3 억원 ○ (적용기한) '25.12.31. 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특법 § 126의2)

종 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 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	40%
⑤ 대중교통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 (적용기한) '25.12.31

개 정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좌 동)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 람료 등('23.4.1. ~ 12.31. 사용분)	30% (40%)
④ 전통시장('23.4.1. ~ 12.31. 사용분)	40% (50%)
⑤ 대중교통('23.4.1. ~ 12.31. 사용분)	40% (80%)

* (좌 동)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100만원)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지원

세무사랑 적용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업무는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화면의 신용카드 등 탭에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탭에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자동 반영되며 2023년도 금액은 상단의 F8 2023년신용카드등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화면의 연말정산입력 탭에 가면 41.신용카드등 사용액 란에 지출액과 공제금액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블클릭하면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팝업창이 활성화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특령 § 121의2⑥)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이자상환액,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보증료 등 〈추 가〉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금액 추가 (좌 동)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조특법 §7)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 (업종) 작물재배업 등 48개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 (좌 동) - (좌 동)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개정이유〉 납세자 혼란 방지

15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조특령 별표6)

종 전	개 정
□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등 제외대상만 규정	□ 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정이유〉 4대 사회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서식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반영합니다.

16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별표7)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3개 분야* 258개 기술
* ① 미래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 ④ 콘텐츠, ⑤ 전자정보디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헬스, ⑧ 에너지·환경, ⑨ 융복합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 ⑫ 첨단 소재·부품·장비, ⑬ 탄소중립</td><td>□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4개 분야 270개 기술</td></tr>
<tr><td>〈신 설〉
〈추 가〉</td><td>- (분야) 방위산업 신설
- (기술) 신규 15개, 확대 8개
■ (신규) 15개 신규기술추가
<table>
<tr><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r><td>에너지, 환경(3개)</td><td>대형원전 제조기술 등</td></tr>
<tr><td>로봇(1개)</td><td>Non-coding 교시기술</td></tr>
<tr><td>첨단소부장(5개)</td><td>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td></tr>
<tr><td>탄소중립(3개)</td><td>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td></tr>
<tr><td>방위산업(3개)</td><td>추진체계 기술 등</td></tr>
</table>
■ (확대) 8개 현행 기술범위 확대
<table>
<tr><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r><td>미래형자동차(1개)</td><td>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운행기록 추가</td></tr>
<tr><td>바이오, 헬스(2개)</td><td>혁신형 신약후보 물질 발굴기술→제조기술 추가 등</td></tr>
<tr><td>에너지, 환경(2개)</td><td>친환경 원전해체 기술→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td></tr>
<tr><td>로봇(1개)</td><td>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td></tr>
<tr><td>탄소중립(2개)</td><td>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항공유 추가 등</td></tr>
</table></td></tr>
</table>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명세서] 화면의 신성장·원천기술 탭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반영합니다.

17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종 전	개 정
□ 국가전략기술 대상 ○ 7개 분야 62개 기술* * ① 반도체 22개, ② 이차전지 9개, ③ 백신 7개, ④ 디스플레이 5개, ⑤ 수소 6개, ⑥ 미래형이동수단 5개, ⑦ 바이오의약품 8개 〈추 가〉	□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 7개 분야 66개 기술 - (기술) 신규 4개, 확대 1개 ■ (신규) 4개 (신규 기술 추가) ■ (확대) 1개 (현행 기술범위 확대)

분야	세부기술
디스플레이 (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3개)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등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HBM 등 추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명세서] 화면의 국가전략기술 탭에서 국가 전략기술대상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반영합니다.

1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추가공제 요건 규정

(조특법 §25의6, 조특령 §22의 10)

종 전	개 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 대 / 중견 / 중소: 3 / 7 / 10% 〈신 설〉	○ 공제율 상향 및 추가 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대 / 중견 / 중소: 5 / 10 / 15% - (추가공제율*) 대 / 중견 / 중소: 10 / 10 /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
〈신 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요건 (❶, ❷ 모두 충족) ❶ 전체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80% 이상 ❷ 다음 중 3개 이상 충족 ⓐ 작가·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 ⓑ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 ⓒ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80% 이상 ⓓ 주요 IP* 중 3개 이상 보유 * 「저작권법」에 따른 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저작재산

〈개정이유〉 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화면의 공제세액계산 탭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19 근로소득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 (조특령 §26의4)

종 전	개 정
□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계산	□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
○ (환산식) (1년 미만 근로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임금) ÷ (해당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 × 12	○ (좌 동)
○ (적용대상) 근로소득금액, 평균임금	○ 근로소득금액

〈개정이유〉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의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조특령 §26의8)

종 전	개 정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 정규직 근로자*: 1명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특수관계인 등 제외	○ (좌 동)
-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을 각각 1명으로 계산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는 육아휴직자는 제외)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고용시 휴가자와 대체인력을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한정하여 적용)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 상인 단시간 근로자: 0.5명	○ (좌 동)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0.75명 *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 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	○ (좌 동)

〈개정이유〉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운용의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조특법 §104의15, §127, 조특령 §104의15)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공제대상) ❶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❷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 (적용기한) '26.12.31
□ 국가 등의 보조금 등을 통한 세제지원 배제 ○ (대상 세제지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 상생협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추 가〉	□ 배제 대상 세제지원 추가 ○ 배제 대상 추가 (좌 동)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화면의 공제세액계산 탭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 전	개 정
〈신 설〉	□ 세액공제 대상 출자 또는 투자범위 ○ (출자) 출자비율 10% 이상 또는 임직원 파견을 동반하는 경우로서 ❶, ❷ 모두 충족한 외국법인에 출자 - ❶ 광업권 또는 조광권 소유, ❷ 광구개발·운영 목적 설립 ○ (투자) 외국자회사*에 대한 다음의 투자 *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를 직접 출자한 외국법인에 한정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 내국인*의 상환기간 5년 이상 금전대여 투자 -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내국인*과 공동으로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를 보유한 내국인

종 전	개 정
	□ 추징세액의 범위: ❶ + ❷ ❶ (세액공제액 상당액) -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 이전·회수한 경우: 세액공제액 × 이전·회수된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 / 총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 -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액 전액 ❷ (이자상당가산액) 추징대상일수[1] ×이자율[2] *[1]: 세액공제 신청일 다음날부터 추징사유발생일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일 [2]: 1일 10만분의 22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화면의 공제세액계산탭에서 입력하여 반영합니다.

22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및 세부사항 규정

(조특법 §121의17, §121의19, 조특령§116의21)

종 전	개 정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	○ (좌 동)
○ (감면적용 특구)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좌 동)
〈추 가〉	- 평화경제특구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 (좌 동)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지역 확대
○ (적용지역) ❶ 기업도시개발구역 ❷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❸ 여수해양박람회특구 ❹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적용지역) (좌 동)
〈추 가〉	❺ 평화경제특구
○ (창업기업 투자·고용요건) - (연구개발업) 투자금액 5억원,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물류·유통업) 투자금액 10억원,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 (제조업 등) 투자금액 20억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 (개발사업 투자요건) 총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좌 동)

〈수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투자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조정명세서]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4.구분란에서 F2-코드도움을 클릭하면 공제구분 팝업창이 활성화되고 해당 감면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여 반영합니다.

2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및 세부사항 규정

(조특법 §121의33,조특령 §116의3)

종 전	개 정
〈신 설〉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이후 2년간 50% 소득· 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최저한세) 50% 감면기간만 적용 ○ (적용기한) '26.12.31. □ 감면대상 업종 ○ 제조업,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 투자누계액의 정의 ○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광업권 등) □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은 제외 ○ (청년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중 15~34세(병역이행 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근로자 □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서비스업 정의 ○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의 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감면한도를 적

종 전	개 정
	용받아 감면받은 세액 중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 * 청년,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1,500만원 □ 감면 신청방법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시행규칙으로 규정 예정)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

〈적용시기〉 '24.1.1. 이후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조정명세서]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4.구분란에서 F2-코드도움을 클릭하면 공제구분 팝업창이 활성화되고 해당 감면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여 반영합니다.

24 혼인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92)

종 전	개 정
〈신 설〉	□ 혼인세액공제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일생 1 회)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024 ~ 2026년 혼인신고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랑 적용방법

혼인세액공제 관련한 업무는 [종합소득세신고서]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화면의 8.종합소득계산 탭 상단의 F7세액공제입력을 클릭하면 세액공제명세서 입력 팝업창이 활성화되고 26.혼인세액공제란에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03
CHAPTER

개정세법 관련 세무사랑 변경 서식

01 종합소득세신고서

1. 개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서] 화면의 1.소득금액명세 탭에 이자배당소득 등 자료를 입력합니다.
2) 배당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달리 배당가산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3) [환경등록] 화면의 개인 탭 신고구분과 [종합소득세신고서]화면의 신고구분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신고서]화면의 1.소득금액명세 탭에서 상단의 신고유형 대표값은 사업장별 신고유형 중 가장 우선하는 신고유형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5) 원천징수당한 사업소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서] 화면의 3.임대·원천징수 탭에서 2.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종합소득세신고서]화면의 4.소득공제명세 탭에는 소득공제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이때 소득공제금액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종합소득세신고서]화면의 7.금융소득계산 탭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소득금액명세 탭에서 금융소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데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 서식 변경사항

1) 홈택스에서 엑셀다운로드한 이자·배당소득자료 업로드 기능 추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홈택스에서 엑셀다운로드한 자료를 세무사랑Pro 개인조정의 [종합소득세신고서] 화면에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홈택스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자료를 자료를 수령하여 [종합소득세신고서]화면에 직접 입력하였는데 1.소득금액명세 탭에서 우측 상단에 CF12이자배당엑셀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자료를 자동으로 수록할 수 있습니다.

2) 배당가산율 변경

법인세율이 인하(10%→9%)되어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인하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이 서식에 반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화면의 1.소득금액명세탭에서 배당소득을 입력한 후 10.필요경비(배당대상액)란에 배당대상액이 입력되면 11.배당가산액 = 대상액 × 10% 금액은 자동계산되어 반영됩니다.

하단에 배당가산율에 대한 변경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1	2	3
1.소득구분코드 -일련번호	40 - 1	21 - 1	
2.신 고 유 형 코 드	12.외부조정		
3. << 관련회사코드 >>	0105		
4.상 호 or 법 인 명	뉴젠임대(대표)	삼성전자	
5.사 업 자 등 록 번 호	111-11-11119	124-81-00998	
6.주 민 등 록 번 호			
7.기 장 의 무	1.복식부기의무자		
8.주 업 종 코 드	930207		
9.총수입금액(이자, 배당)	50,000,000	50,000,000	
10.필요경비 (배당대상액)		50,000,000	
11.배당가산액=대상액X10%		5,000,000	
12.소득 금 액(이자, 배당)	50,000,000	55,000,000	
13.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14.원천징수세액 - 농특세			
15.이월결손금공제 여 부			
16.공 동 사 업 장 여 부	1.공동사업장		
17.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			
18.과 세 기 간 시 작 일	2024-01-01		
19.과 세 기 간 종 료 일	2024-12-31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계정 전자

2024.01.01. 이후의 배당소득 : 10%
2023.12.31. 이전의 배당소득 : 11%

Tip 배당가산액(2024.01.01. 이후의 배당소득 : 10%, 2023.12.31. 이전의 배당소득 : 11%)

3) 신고구분 체크 기능 추가

[환경등록]의 개인탭 3.신고구분(정기/수정)의 내용과 [종합소득세신고서]화면의 신고구분의 내용이 다를 경우 신고구분 체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화면의 상단 F6추가입력 기능키를 통해서 신고구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회계 인사급여 개인 영업

1	감가상각 시부인방법	1.계정과목별시부인	1.계정과목별시부인 2.자산별시부인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조정등록방법	2.직접입력	
3	신고구분(정기/수정)	0.정기신고	
4	지방세신고구분(정기/수정)	0.정기신고	

F6 추가입력 SF6 분리과세주택.연금 F8 근로경비내역 CF8 연금경비내역 F11 저장 F12 불러오기 SF12 수정신고작업방법

추가입력사항

내외국인: 1 1.내국인 2.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2 1.여 2.부
분리과세 주택임대: 2 1.여 2.부
신고구분: 1 1.정기신고 2.수정신고 3.경정청구 4.기한후신고 5.추가신고
거주지국: KR 한국
휴대폰번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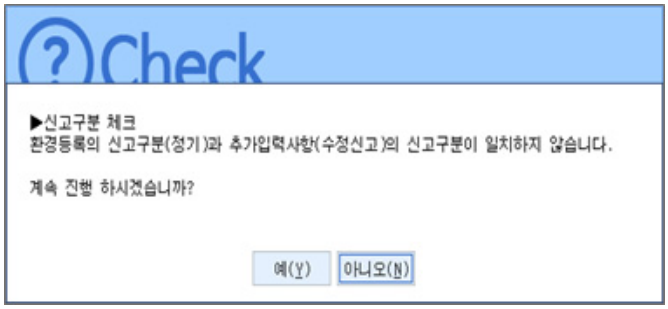

4) 신고유형 메시지 추가 및 신고유형 마감 오류 메시지 수정

[종합소득세신고서]화면의 1.소득금액명세 탭에서 상단의 신고유형 대푯값은 사업장별 신고유형 중 가장 우선하는 신고유형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고유형순위

8.성실신고확인 > 2.외부조정 > 1.자기조정 > 4.간편장부 > 5.추계-기준율 > 6.추계-단순율 > 7.비사업자 > 9.분리과세

이를 위해 신고유형에 커서가 위치하고 있을 때 하단에 신고유형에 관한 메시지를 추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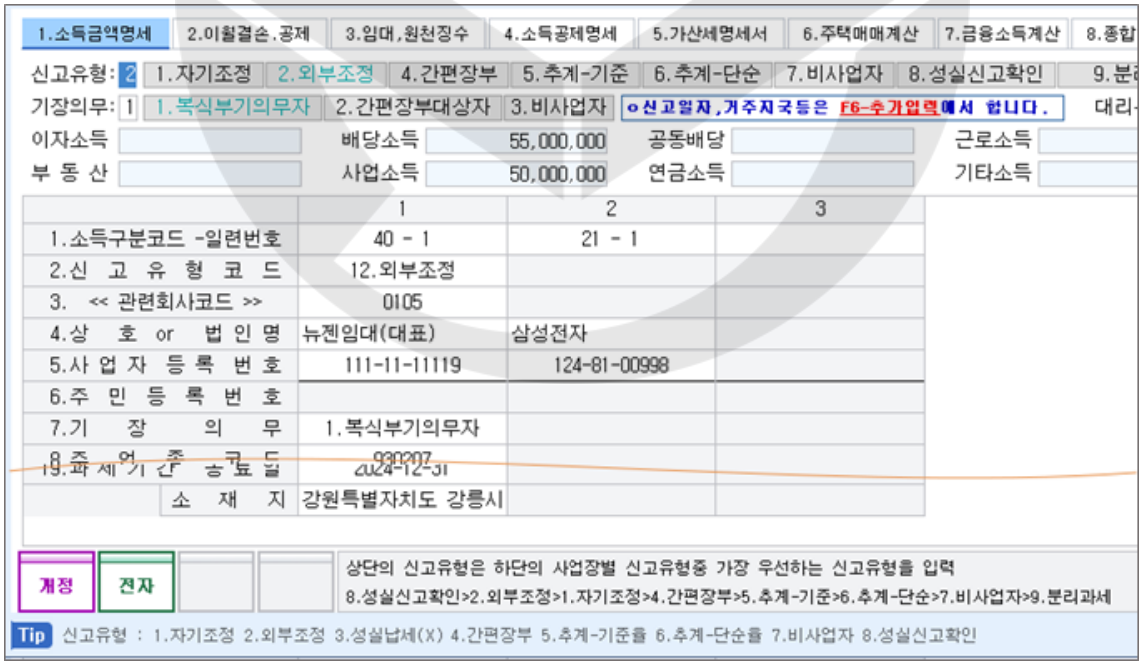

아울러 신고유형 마감 오류메시지 내용에 신고유형 코드 대신 문자로 표시하여 오류를 수정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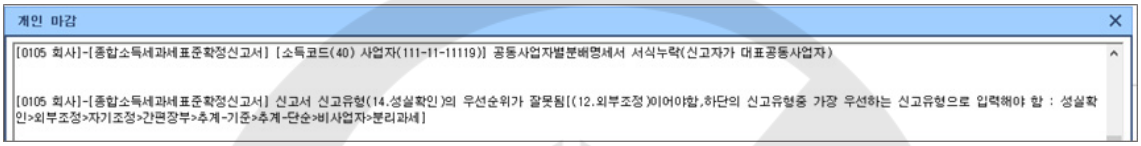

5) 임대/원천징수 탭 기능 개선

[종합소득세신고서]화면의 3.임대.원천징수 탭 2.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에서 16.상호(성명)에서 F2-거래처코드 도움창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16.상호(성명)란에 입력 후 엔터하면 종전에는 입력구분란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를 수정하여 17-1.사업자등록 란으로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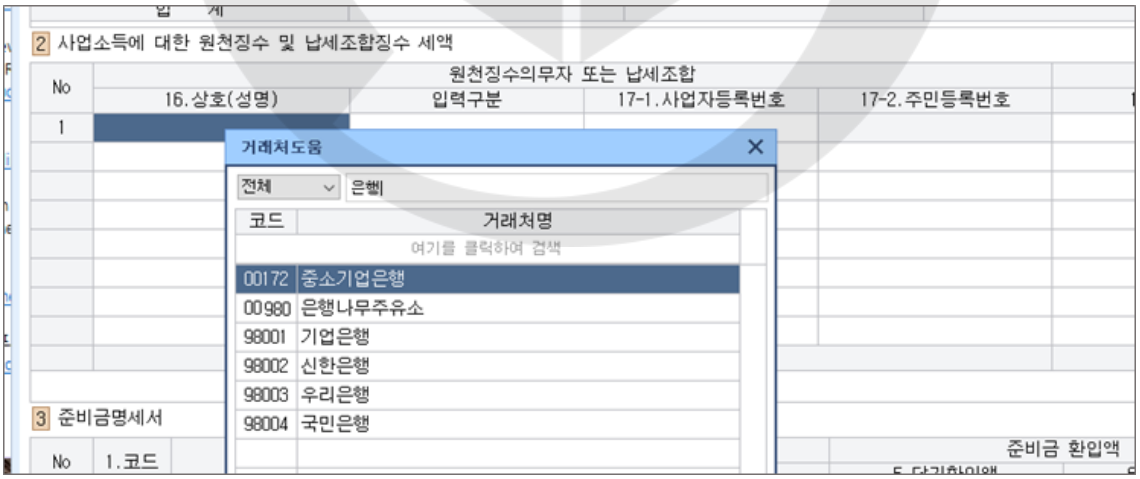

6) 소득공제명세 탭 F8 한도계산부표 기능 개선

[종합소득세신고서]화면의 4.소득공제명세 탭은 소득공제의 내용이 반영된 탭으로 소득공제 금액에 한도가 적용됩니다. F8 한도계산부표 기능키를 클릭하면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팝업창이 활성화되고 이중에서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란에 금액을 입력시 입력한 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한도초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도록 개선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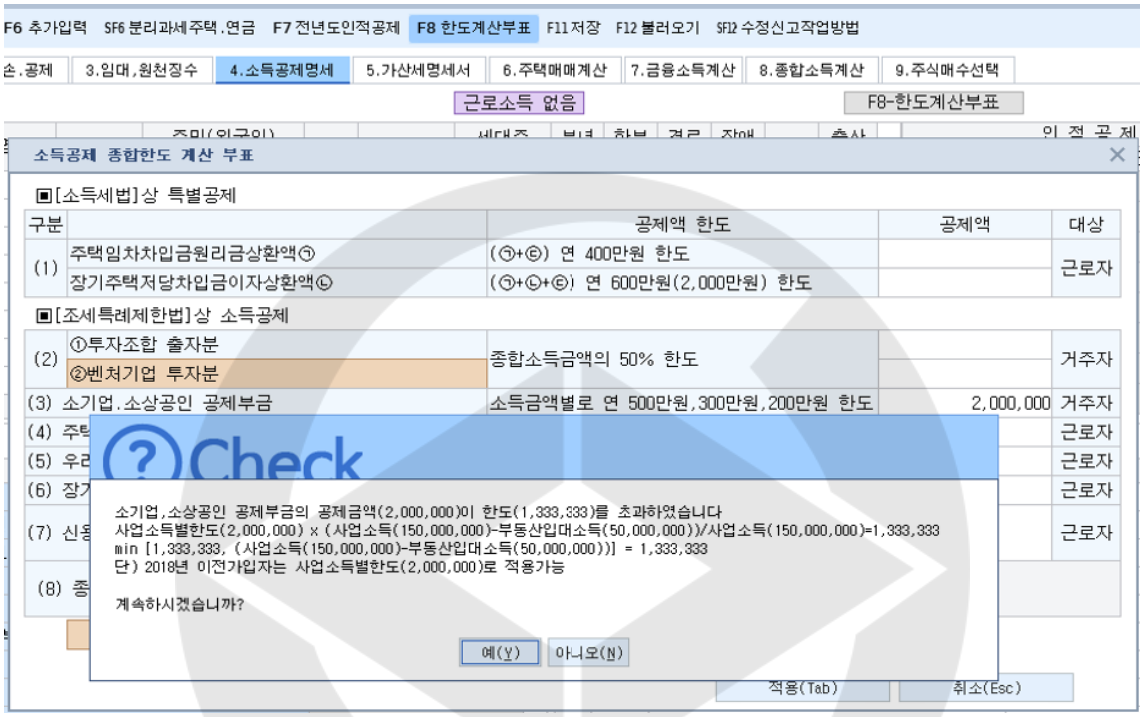

7) 가산세명세서 탭의 가산세 명칭 변경

5.가산세명세서 탭에서 종전의 무기장 가산세가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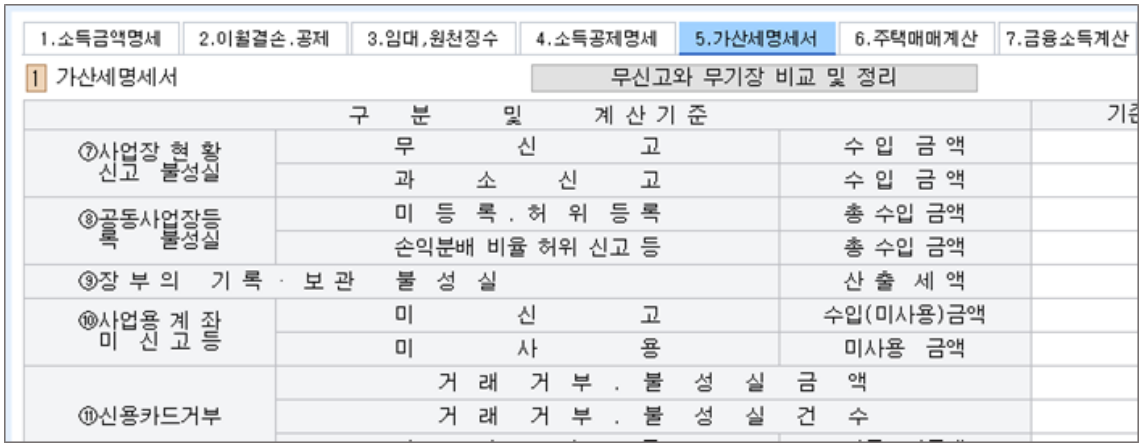

8) 금융소득계산 탭에서 화면배치 변경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금융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이를 비교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교산출세액을 우측화면으로 이동하여 비교가 편리하도록 화면 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1.소득금액명세 | 2.이월결손.공제 | 3.임대.원천징수 | 4.소득공제명세 | 5.가산세명세서 | 6.주택매매계산 | 7.금융소득계산 | 8.종합소득계산 | 9.주식매수선택

1 금융소득 명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비영업대금이익(25%)		(6)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a)비영업대금이익(14%)		(7)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8)위 (6),(7)외의 배당소득	
(3)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4)위 (1),(a),(2),(3) 외의 이자소득	50,000,000	(9)배당소득 합계(6+7+8)	
(5)이자소득 합계(1+a+2+3+4)	50,000,000		

2 금융소득금액(5+9)이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금융소득금액(5+9)	50,000,000	(22)비영업대금이익[(1+3)X25/100 + (a)X14/100]	
(11)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23)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10-(1+a+3))	50,000,000
(12)기준초과금액(10-11)	30,000,000	(24)[23X(14/100)]	7,000,000
(13)배당가산액		(25)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14)	150,000,000
(14)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150,000,000	(26)소득공제	5,500,000
(15)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12+13+14)	180,000,000	(27)과세표준(25-26)	144,500,000
(16)소득공제	5,500,000	(28)기본세율	35 %
(17)과세표준(15-16)	174,500,000	(29)산출세액	35,135,000
(18)기본세율	38 %	(30)비교산출세액 계(22+24+29)	42,135,000
(19)산출세액	46,370,000	(31)종합소득산출세액(21와30 중 큰 금액)	49,170,000
(20)[11X(14/100)]	2,800,000		
(21)비교산출세액계(19+20)	49,170,000		

(22)번부터 우측화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9) 표준세액공제 자동반영 여부 추가

[종합소득세신고서] 화면의 상단 F6추가입력 기능키를 클릭하면 추가입력사항 팝업창이 활성화되고 표준세액자동반영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표준세액자동반영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 1.자동반영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② 2.반영안함은 특별세액공제만 반영하고 표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해도 받지 않고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이때 표준세액공제가 항상 0이므로 표시하지 않으며, 표준세액을 0으로 하기 위해 (-)금액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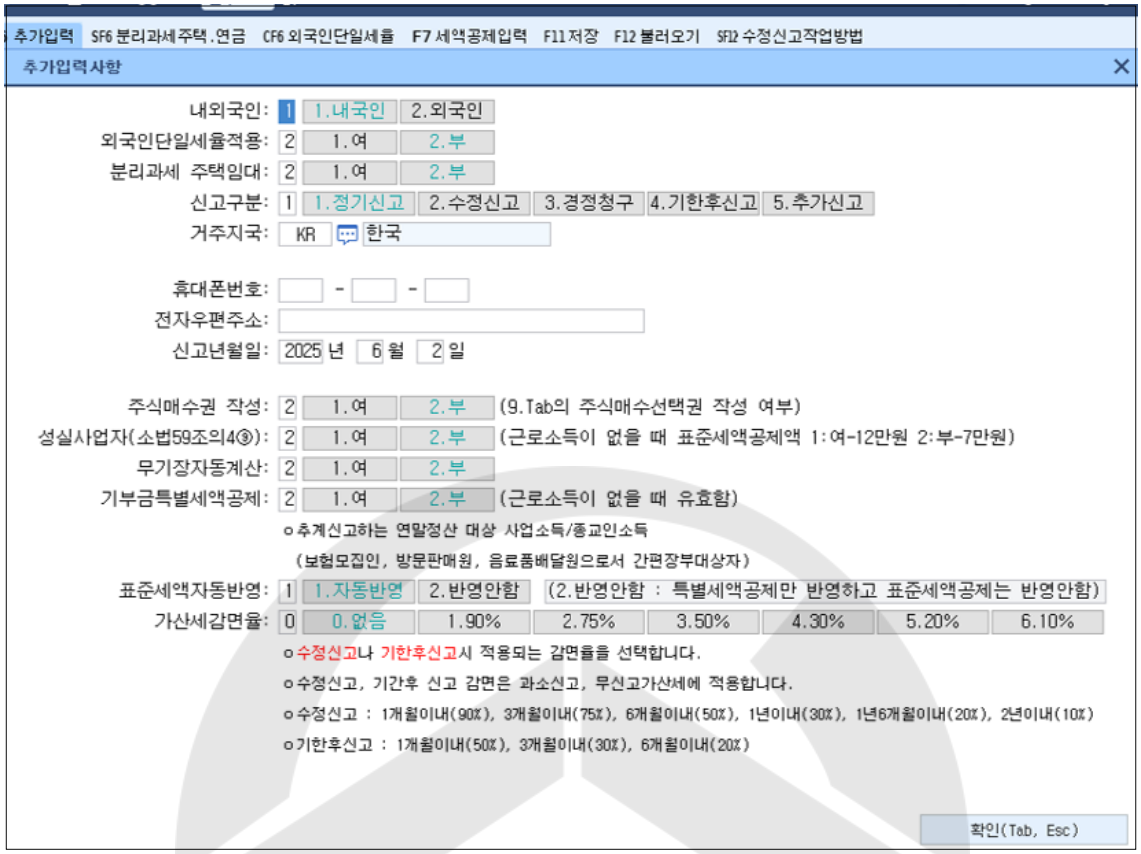

1. 자동반영을 선택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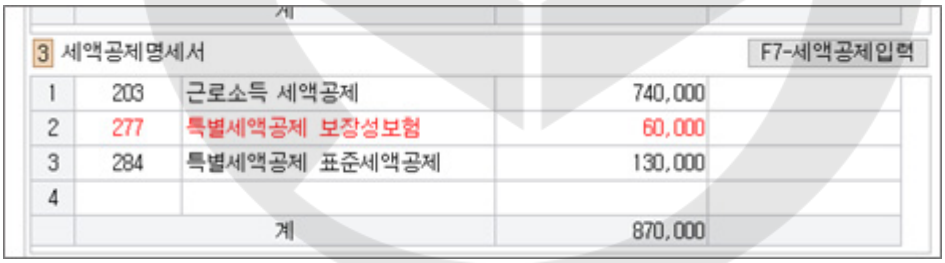

3 세액공제명세서 F7-세액공제입력

1	203	근로소득 세액공제	740,000	
2	277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	60,000	
3	284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0,000	
4				
		계	870,000	

2. 반영안함을 선택한 경우

3 세액공제명세서 F7-세액공제입력

1	203	근로소득 세액공제	740,000	
2	277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	60,000	
3				
		계	800,000	

10) 배당세액공제 자동 반영

배당소득이 포함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가산액을 가산한 후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화면의 7.금융소득계산 탭에서 계산된 (40)배당세액공제금액은 8.종합소득계산 탭에서 상단의 F7세액공제입력을 클릭하면 세액공제명세서 입력 팝업창이 활성화되고 202.배당세액공제액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직접 입력해야 했습니다.

1.소득금액명세 | 2.이월결손,공제 | 3.임대,원천징수 | 4.소득공제명세 | 5.가산세명세서 | 6.주택매매계산 | 7.금융소득계산 | 8.종합소득계산 | 9.주식매수선택

1 금융소득 명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비영업대금이익(25%)		(6)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10,000,000
(a)비영업대금이익(14%)		(7)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8)위 (6),(7)외의 배당소득	
(3)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4)위 (1),(a),(2),(3) 외의 이자소득	50,000,000	(9)배당소득 합계(6+7+8)	10,000,000
(5)이자소득 합계(1+a+2+3+4)	50,000,000		

2 금융소득금액(5+9)이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금융소득금액(5+9)	60,000,000	(22)비영업대금이익[(1+3)X25/100 + (a)X14/100]	
(11)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23)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10-(1+a+3))	60,000,000
(12)기준초과금액(10-11)	40,000,000	(24)[23X((14/100)]	8,400,000
(13)배당가산액	1,000,000	(25)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14)	120,250,000
(14)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120,250,000	(26)소득공제	5,500,000
(15)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12+13+14)	161,250,000	(27)과세표준(25-26)	114,750,000
(16)소득공제	5,500,000	(28)기본세율	35 %
(17)과세표준(15-16)	155,750,000	(29)산출세액	24,722,500
(18)기본세율	38 %	(30)비교산출세액 계(22+24+29)	33,122,500
(19)산출세액	39,245,000	(31)종합소득산출세액(21와30 중 큰 금액)	42,045,000
(20)[11X(14/100)]	2,800,000		
(21)비교산출세액계(19+20)	42,045,000		

4 배당세액공제

(40) [13와 (31-30) 중 작은 금액]	1,000,000

6.주택매매계산 | 7.금융소득계산 | 8.종합소득계산 | 9.주식매수선택

2 세액감면명세서

No	코드	①해당법조문(제목)	③금액	④사업자번호
1				
		계		

3 세액공제명세서 F7-세액공

1	203	근로소득 세액공제	740,000	
2	277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	60,000	
3	202	배당 세액공제	1,000,000	
4				
		계	1,800,000	

11) 혼인세액공제란 추가

세법의 개정으로 혼인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신고서] 화면의 8.종합소득계산 탭에 혼인세액공제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상단의 F7세액공제입력 기능키를 클릭하면 세액공제명세서입력 팝업창이 활성화되고 26번에 혼인세액공제란이 신설되어 세액공제 범위 내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20	210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21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22	246	정 치 자 금 기 부 금	10만원 이 하		100/110		
23	281		10만원 초 과		15/100 (25/100)		
24	28A	고 향 사 랑 기 부 금	10만원 이 하		100/110		
25	28B		10만원 초 과		15/100		
26	280	혼 인 세 액 공 제					

12) 주식매수선택 탭 서식 개정

[종합소득세신고서] 화면의 9.주식매수선택 탭에는 주로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서식 개정으로 ⑩ 비과세행사이익과 ⑭차이추가 란이 추가되었습니다.

1.소득금액명세 | 2.이월결손.공제 | 3.임대.원천징수 | 4.소득공제명세 | 5.가산세명세서 | 6.주택매매계산 | 7.금융소득계산 | 8.종합소득계산 | 9.주식매수선택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

No	①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⑨행사이익 {⑦X(⑧-⑥)}	⑩비과세 행사이익	⑪과세대상 행사이익 (⑨-⑩)
			③일자			④주식수	⑤주당행사가액	⑥일자			⑦주식수	⑧주당시가			
1	삼성전자		2020	1	1	20,000	9,000	2024	5	12	20,000	30,000	420,000,000	200,000,000	220,000,000
2															
												합 계	420,000,000	200,000,000	220,000,000

2 납부특례세액의 계산

No	⑫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포함	⑬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제외	⑭차이(⑫-⑬)	⑮납부특례세액(⑭ X 4/5)
㉮ 근로(기타)소득금액	20,250,000			
㉯ 종 합 소 득 금 액	181,250,000	161,000,000		
㉰ 소 득 공 제	5,500,000	5,500,000		
㉱ 과 세 표 준	175,750,000	155,500,000		
㉲ 세 율				
㉳ 산 출 세 액	42,045,000	33,175,000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2,800,000	2,800,000		
㉶ 결 정 세 액	39,245,000	30,375,000	8,870,000	7,096,000

02 종합소득세신고서 (단순경비율)

1. 개요

소득세법은 업종별로 장부기장 및 추계신고 등 판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소득세신고서(단순경비율)]화면에서 작성합니다.

2. 서식 변경사항

1) 혼인세액공제란 추가

세법의 개정으로 혼인신고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종합소득세신고서(단순경비율)]화면에 혼인세액공제란을 추가하였습니다. 36.세액공제계 란을 더블클릭하면 세액공제계 팝업창이 활성화되어 혼인세액공제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분납할 세액란 추가

[종합소득세신고서(단순경비율)]화면의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59-60) 아래에 분납할 세액란을 추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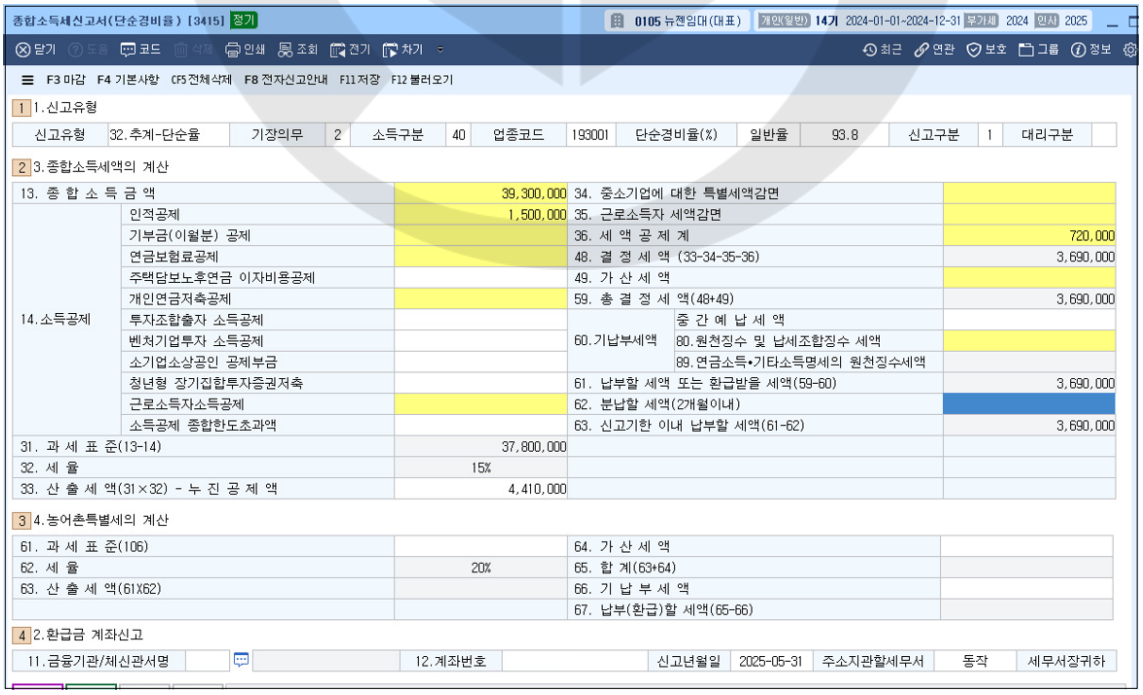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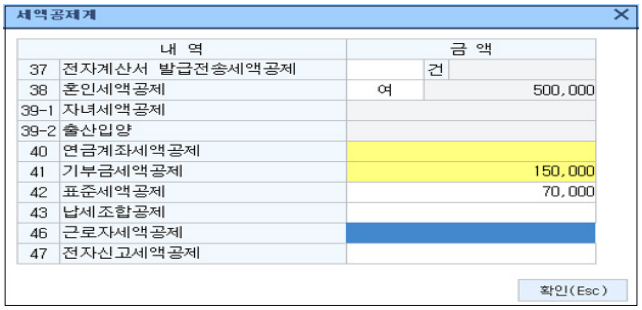

03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1. 개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2. 서식 변경사항

1) 세액공제 [계산내역-F4] 공제율 변경

통합투자세액공제,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 계산기준 및 계산내역란 F4계산내역 공제율을 변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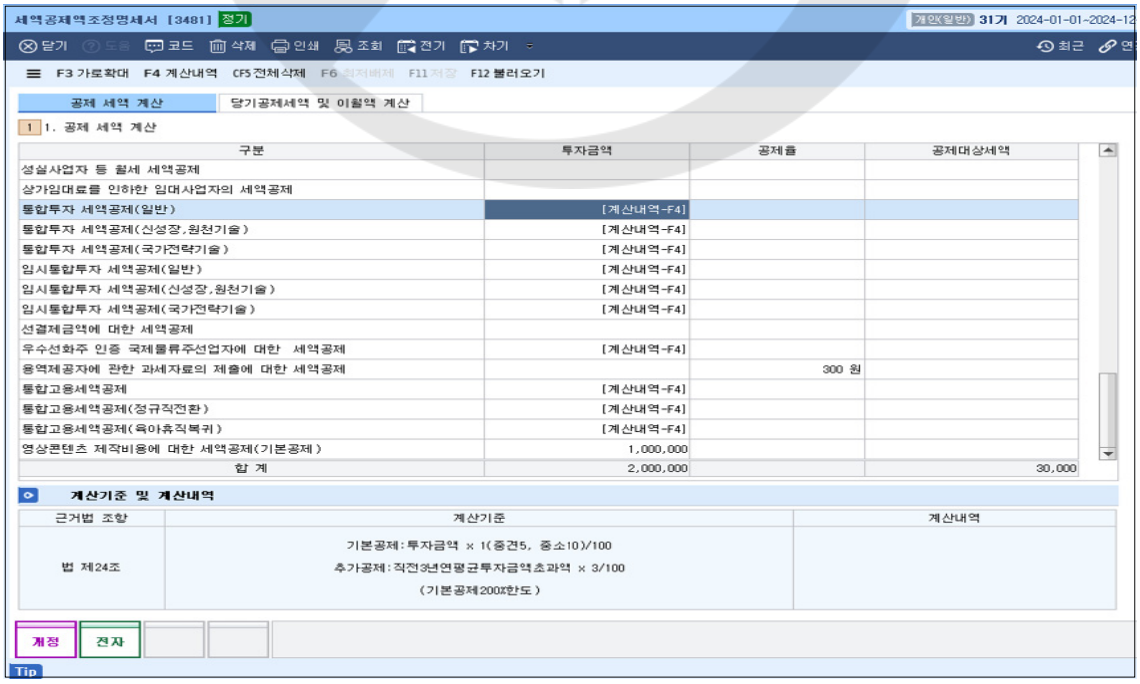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란을 추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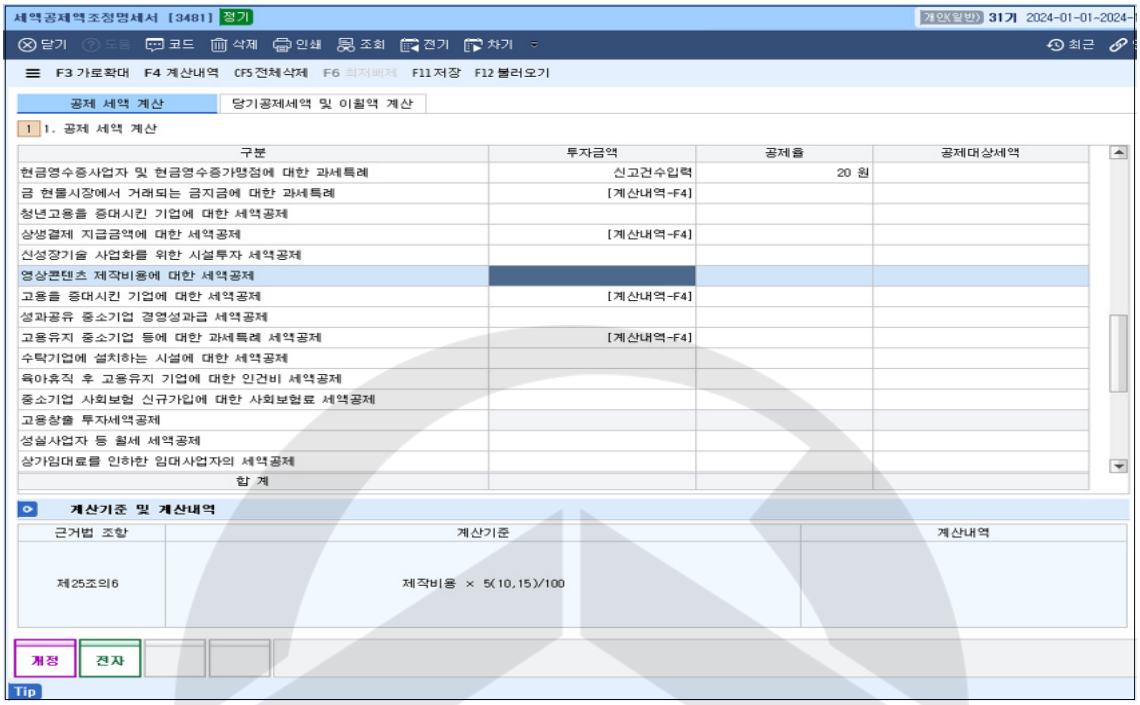

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란을 추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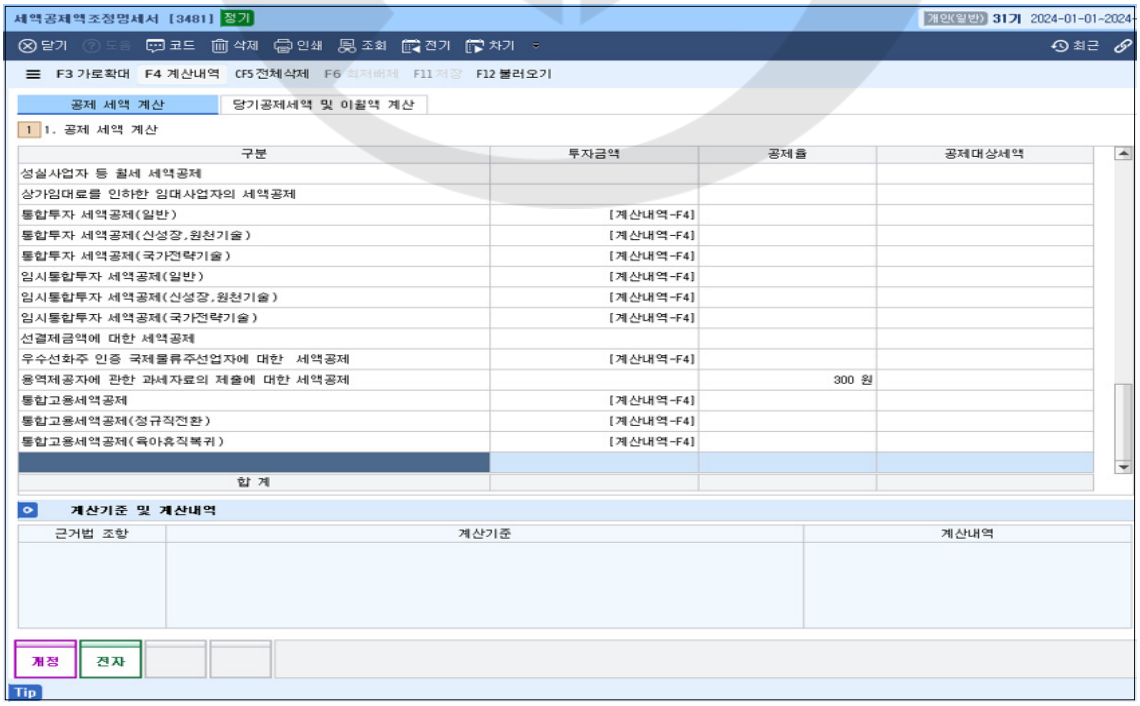

4)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 탭 개선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 탭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위해 공제감면코드 변경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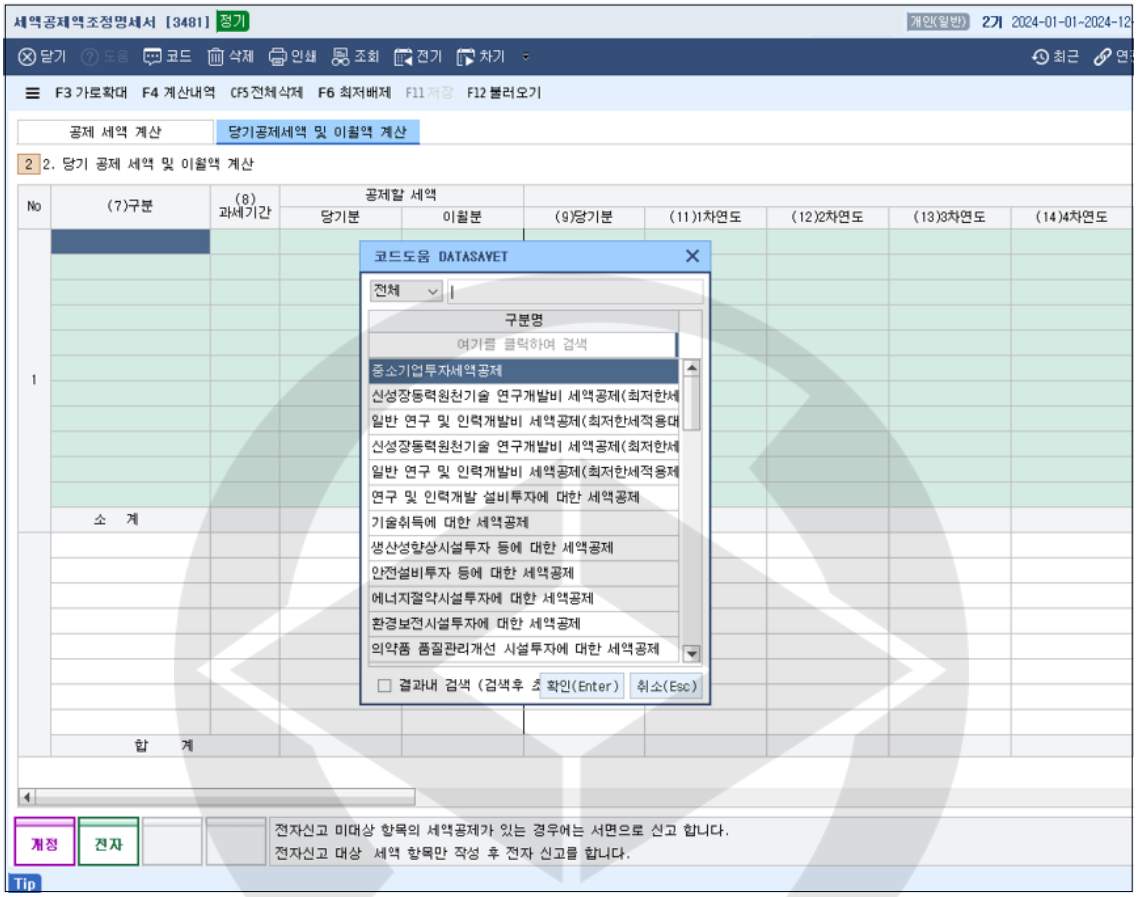

0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1. 개요

업무용승용차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어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고 추가로 보험가입여부 및 운행일지 작성에 따라 일정 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전용보험 의무가입자의 경우 미가입시는 업무사용비율의 50%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합니다.

2. 서식 변경사항

1) 보험(계산), 대상일수, 가입일수, 가입비율 추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화면에 보험가입관련 대상일수, 가입일수, 가입비율이 추가되었습니다.

성실신고, 전문직(50%미인정)에 체크한 경우 보험 미가입시 업무사용비율 금액의 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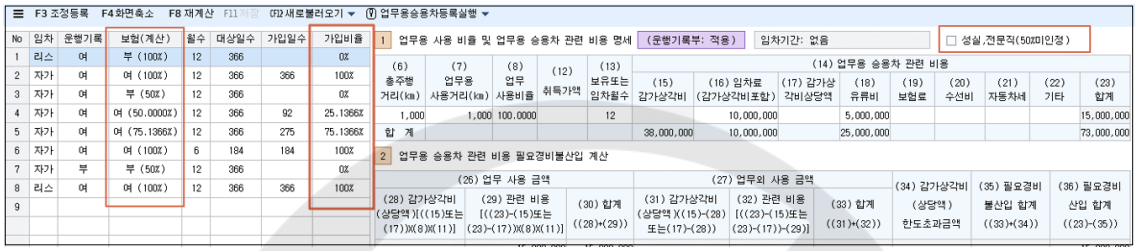

0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1. 개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으로 구분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감면비율이 50% 또는 100%가 적용되는데 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지역의 제한이 없고 감면비율이 50%만 적용됩니다.

2. 서식변경사항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세액계산서]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경우 (19)감면대상산출세액의 감면율과 (20)감면비율은 50%로 고정됩니다.

(19)감면대상산출세액 란을 더블클릭하면 감면대상산출세액계산 팝업창이 활성화되어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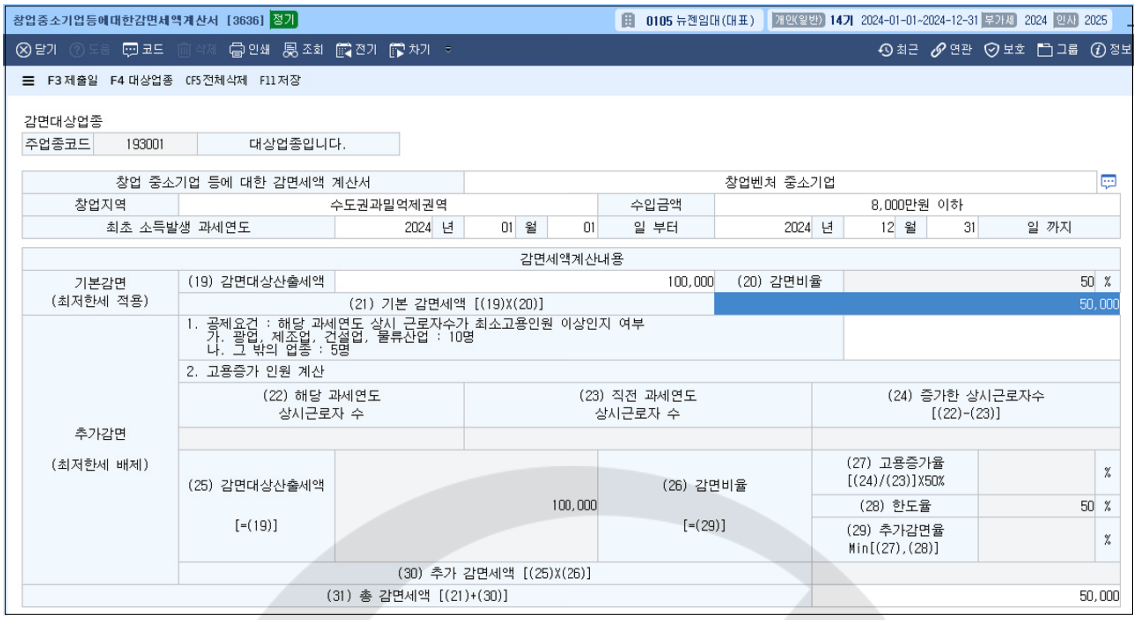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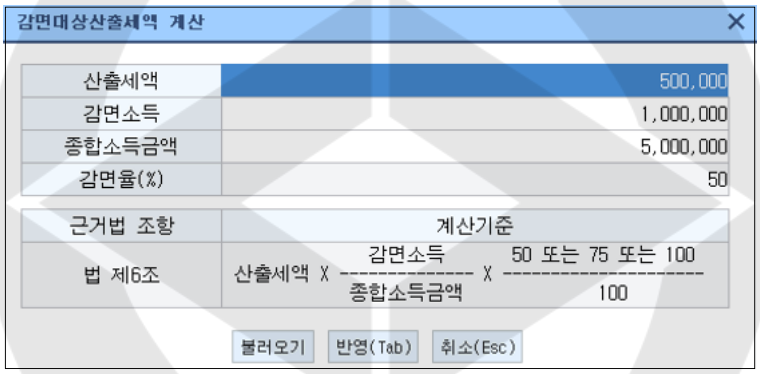

06 중소기업기준검토표

1. 개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일반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작성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과 별도로 [회사등록]의 16.중소기업여부에서 중소기업을 선택하여야 추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등 계산시 중소기업으로 적용되어 진행됩니다.

2. 서식변경사항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서식의 유예기간의 요건과 검토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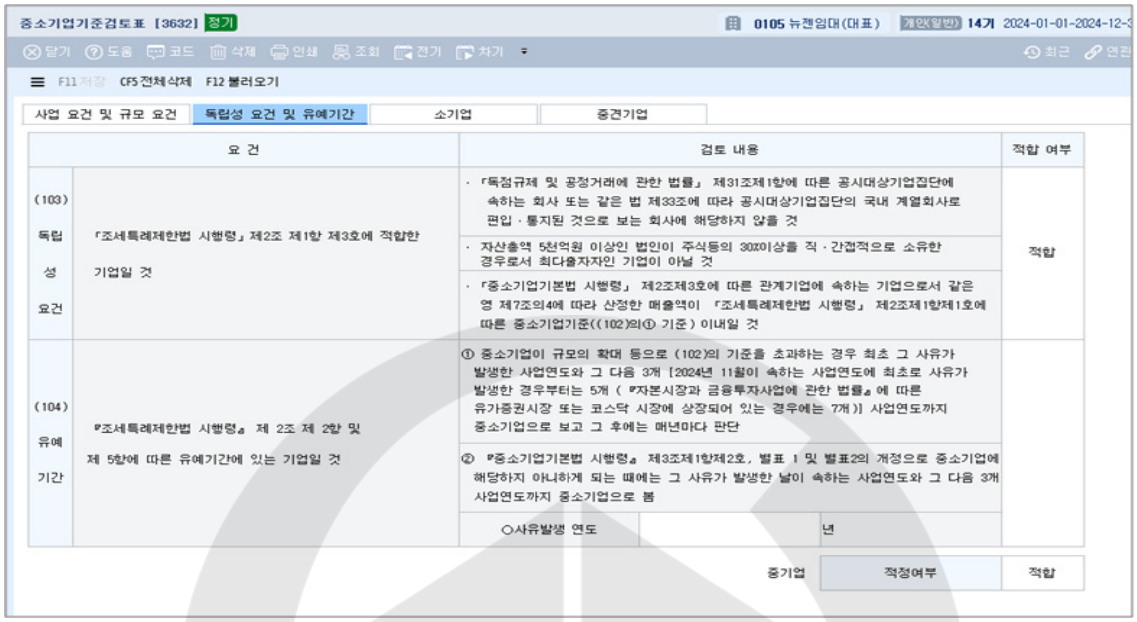

07 선급비용조정명세서

1. 개요

보험료 등과 같이 2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각 과세연도 별로 안분하여 인식하여야 하므로 차기 이후에 인식해야 할 선급비용을 계산합니다.

2. 서식변경사항

선급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선급비용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활용하는데 화면에 기간일수와 대상기간일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출력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08 추계신고자 관리

1. 개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추계신고자관리] 서식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서식변경사항

신고서 서식변경에 따른 항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혼인세액공제와 분납할 세액 및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등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등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인쇄시 장애인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무기장가산세를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09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계산명세서

1. 개요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계산명세서를 작성합니다.

2. 서식변경사항

구분에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 농어가 부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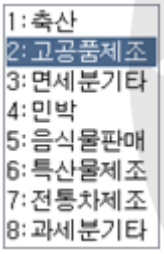

2. 어로어업, 양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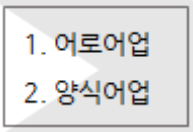

10 전자계산서발급세액공제신고서

1. 개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식변경사항

종전에는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합계액 3억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기수 1기 일 때만 활성화되고 직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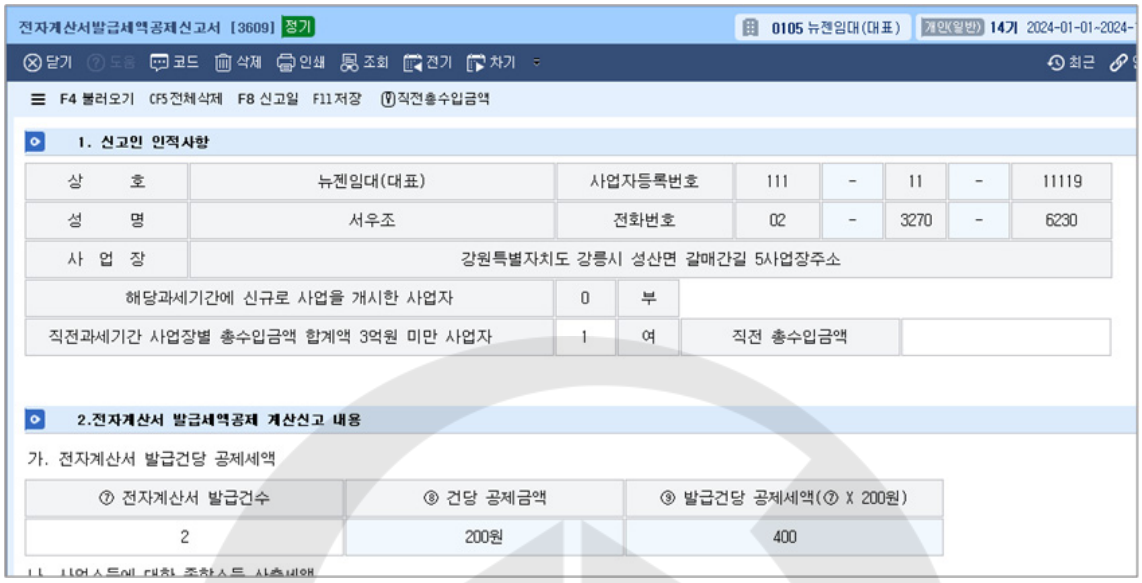
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합계액 3억원 미만 사업자여부에 기수 1기이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